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0.19(금)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덕기 사무관 (02-2100-2835) 김경호 사무관 (02-2100-2836)	

제 목 : 아시아경제 10.19일자 “1+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다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아시아경제는 10.19일자 “1+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” 제하 기사에서
 - “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”라고 보도

< 참고 내용 >

- 정부는 「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」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,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
 - 따라서, 9.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*(입주권 2개)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

*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§76조①항다목)